

전시참가 신청서

고양가구박람회 사무국

TEL: 031-994-3554

Email: web@visconad.com



■ 제 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해 소정의 참가 계약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기관 및 단체 등의 전시 참가자를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제18회 고양가구박람회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경기도양시 일산가구협동조합을 말한다.

■ 제 2조 [참가신청 및 계약]

1.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 참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전시회 참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 3조 [전시면적 배정]

1. 주최자는 전시자 품목이 중복된 경우 참가업체 품목규정에 의해 선착순 배정한다.
2. 주최자는 전시회장의 공간 조화와 관람 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관자의 재량에 따라 시행하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 4조 [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 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 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 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 5조 [납입 조건]

1. 전시자는 참가 신청서를 전시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온라인 접수)
2.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계약서 제출 즉시, 잔금은 7일 이내까지 완납해야 한다.
3.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계약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 6조 [해약]

1.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 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시자가 주최자의 승인 없이 참가를 포기할 경우에도 참가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전시자가 전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 7조 [참가취소 및 위약금]

전시자가 참가 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 또는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 취소 및 규모 변경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전시회 개최일로부터 183일 전 취소 또는 규모 축소 시 :
기 납부액 전액 환불
- 전시회 개최일로부터 122일 전 취소 또는 규모 축소 시 :
총 참가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 전시회 개최일로부터 90일 전 취소 또는 규모 축소 시 :
총 참가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 제 8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 9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 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 10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 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은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제 11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는 전시 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 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 제 12조 [안전관리 총칙]

1. 참가업체는 개장시간 이전에 전시품 및 부스 환경을 확인하여 안전한 행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폐장 시 모든 안전 요소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2. 사무국은 안전한 행사 환경 조성을 위해 장치, 행사, 철거 기간에 경비구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참가업체 및 기타 용역업체는 경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필요시 참가업체는 인명·재산피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4. 참가업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및 전시품·제반장비·시설의 최종적인 보호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상황 발생 시 즉시 사무국에 통보하고 사무국을 면책하여야 한다.
5. 참가업체는 전시장 내 모든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참가업체의 과실(참가업체 발주 용역사 포함)로 인한 오염·파손·손상·훼손 등 발생 시 전시장 규정에 맞추어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6. 전시품의 실연(實演)이 이루어지는 장소 주변에는 적절한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폭발물,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의 전시장 내 반입은 금지한다. 다만, 전시품 가동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위험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전시 개최 20일 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전기·가스·압축공기·급배수 사용 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해당 용역업체 책임자가 부스 내 설비와 시운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매일 행사 종료 후에는 적절한 안전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 후 퇴장하여야 한다. 또한, 불량 소재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보수를 지시하고 사무국에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참가업체는 제 12조 [안전관리 총칙]을 사전 숙지하여야 하며 임대한 부스 관리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참가업체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업체에게 있다.

■ 제 13조 [차량 운행 및 화물주차장 이용 규정]

1. 반입·반출 기간에는 상하차 작업 외에는 전시품 상하차 지역 및 반입·반출 지역에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물품 운송이 끝난 즉시 이동하여 통행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시장 내 출입·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전시장 내 규정 속도 등 별도 고지된 속도 이하로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본 전시회 규정 속도 : 시속 5km 이하)
2. 전시품 반입·반출기간에 승용차 및 승합차는 화물주차장에 진입할 수 없다. (단, 사전 주최측 승인 시 가능)

■ 제 14조 [방화 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 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 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15조 [안전관리 기타사항]

참가업체는 본 규정을 포함한 킨텍스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참가업체에게 있다.

■ 제 16조 [보충 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 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 17조 [참가업체와 소비자 분쟁 해결]

참가업체는 판매 또는 대여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소비자와 분쟁 시 신속히 (분쟁 접수 후 즉시 또는 5일 이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조치하지 않을 시 차기부터 전시회를 참석할 수 없다.

■ 제 18조 [분쟁 해결]

본 참가 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 기간에 발생하는 분쟁, 손해 배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주최자 소재지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